#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이정문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6409 발의연월일: 2024. 12. 11.

발 의 자:이정문・이병진・문진석

황명선 · 이학영 · 문금주

한민수 • 이연희 • 임광현

이인영 · 조승래 · 김원이

박수현 • 박 정 • 홍기원

의원(15인)

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관리인이 매년 1회 이상 그 사무에 관하여 구분소유자 및 그로부터 승낙을 받아 전유부분을 점유하는 자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있음.

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합건물과 관련하여 구분소유자 및 점유자에게 관리비 등과 관련한 정보의 공개가 평소 잘 되지 않아 관리를 둘러싼 각종 비리와 분담금 횡령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.

이에 관리인이 공용부분 관리비 및 전기료·수도료 등과 관련한 내역 등을 매월 구분소유자 및 점유자에게 보고하도록 하여 집합건물 관리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(안 제26조 등).

#### 법률 제 호

#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26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4항(종전의 제3항) 각호 외의 부분 전단 중 "제1항"을 "제1항 및 제2항"으로, "제2항"을 "제3항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5항(종전의 제4항) 중 "제3항"을 "제4항"으로 한다.

- ② 관리인은 구분소유자 및 그의 승낙을 받아 전유부분을 점유하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월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. 이 경우 해당 건물의 인터넷 홈페이지(인터넷 홈페이지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건물의 게시판을 말한다)에 공개하는 것으로 서면 보고를 갈음할 수 있다.
- 1. 제17조에 따른 공용부분의 관리비용 등 관리단의 사무 집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의 비용과 분담금에 대한 산정방법, 징수·지출·적립내역
- 2. 전기료, 수도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의 사용료에 대한 산정방법, 징수·지출·적립내역
- 3. 제1호 및 제2호 외에 관리단이 얻은 수입 및 그 사용 내역

- 4. 집합건물의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 비용
- 5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

제26조의5제1항제3호 중 "제26조제1항"을 "제26조제1항·제2항"으로, "제2항"을 "제3항"으로 한다.

제66조제3항제4호 중 "제26조제1항(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"을 "제26조제1항 및 제2항(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각각 포함한다)"으로 하고, 같은 항 제4호의2 중 "제26조제2항"을 "제26조제3항"을 "제26조제3항"으로 하며, 같은 항 제4호의3 중 "제26조제3항"을 "제26조제4항"으로, "제26조제1항"을 "제26조제1항·제2항"으로, "제2항"을 "제3항"으로한다.

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<u> </u>	26조(관리인의 보고의무 등) ① 현행과 같음) ② 관리인은 구분소유자 및 그의 승낙을 받아 전유부분을 점유하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사항을 매월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. 이 경우 해당 건물의 인터넷 홈페이지(인터넷 홈페이지) 없는 경우에는 해당건물의 게시판을 말한다)에 공개하는 것으로 서면 보고를 갈음할 수 있다 제17조에 따른 공용부분의관리비용 등 관리단의 사무집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정하는 내용의 비용과 분담금에 대한 산정방법, 징수·지출·적립내역

## ② (생략)

③ 이해관계인은 관리인에게 제1항에 따른 보고 자료, 제2항에 따른 보고 자료, 제2항에 따른 장부나 증빙서류의 열람을 청구하거나 자기 비용으로 등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있다. 이 경우 관리인은 다음각 호의 정보를 제외하고 이에 응하여야 한다.

## 1. · 2. (생략)

④ 「공동주택관리법」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및 임 대주택과 「유통산업발전법」에 따라 신고한 대규모점포등 관리자가 있는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에 대해서는 제1 항부터 제3항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.

⑤ (생략)

제26조의5(집합건물의 관리에 관 제

이 얻은 누입 및 그 사용 내					
<u>역</u>					
4. 집합건물의 주요 시설의 교					
체 및 보수 비용					
5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					
<u>는 사항</u>					
③ (현행 제2항과 같음)					
<u>4</u>					
제1항 및 제2항제3항					
1. • 2. (현행과 같음)					
<u>⑤</u>					
22					
<u>제4항</u>					
<u>⑥</u> (현행 제5항과 같음)					
126조의5(집합건물의 관리에 관					

한 감독) ①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(이하 "시·도지사"라 한다)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(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, 이하 "시장·군수·구청장"이라 한다)은 집합건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유부분이 50개 이상인 건물의 관리인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고하게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.

- 1. · 2. (생략)
- 3. <u>제26조제1항</u>에 따른 보고와 같은 조 <u>제2항</u>에 따른 장부의 작성·보관 및 증빙서류의 보 관에 관한 사항
- 4. ~ 6. (생략)
- ② (생 략)

제66조(과태료) ①·② (생 략)

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
한 감독) ①
1.・2. (현행과 같음)
3. <u>제26조제1항ㆍ제2항</u>
제3항
4. ~ 6. (현행과 같음)
② (현행과 같음)
제66조(과태료) ①·② (현행과
같음)
3

- 1. ~ 3. (생략)
- 4. 제26조제1항(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
- 4의2. 제26조제2항(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을 위반하여 장부 또는 증빙서류 를 작성・보관하지 아니하거 나 거짓으로 작성한 자
- 4의3. 제2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(제52조에서 준용하 는 경우를 포함한다)을 위반 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제26 조제1항에 따른 보고 자료 또 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장 부나 증빙서류에 대한 열람 청구 또는 등본의 교부 청구 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 로 응한 자

5. ~ 8. (생략) ④ (생략)

1. ~ 3. (현행과 같음)
4. <u>제26</u> 조제1항 및 제2항(제52
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각각
<u> 포함한다)</u>
4의2. <u>제26조제3항</u>
4의3. 제26조제4항
300.5
<u>제26조</u>
<u>제1항・제2항</u>
제3항
5. ~ 8. (현행과 같음)
④ (혀해과 간음)